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037 |
|----------|------|

2023년 9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8월 14일, 김기덕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: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기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우수 교육사례 등의 홍보·발굴 사항과 표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조항 규정(안 제15조).
-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기타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박귀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우수 교육사례 발굴·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며,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|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|